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

2002년 12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2. 12. 9. 평창군수(지역도시과장)

나. 회부일자 : 2002년 12월 20일

다. 상정일자 : 제1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년 12월 23일)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가. 제안이유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위원회 목적 (안 제12조)
- 위원회 구성·위촉 (안 제2조, 제3조)
- 위원장 직무 (안 제7조)
- 회의 (안 제8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태영)

- 본 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지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것을 근거로 제정되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써 위원의 구성·위촉·기능·위원장의 직무·회의·의결·청취방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구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써 위원장은 군수가, 당연직공무원은 부군수를 비롯한 7개 실과장으로 총 공무원이 8명이 당연직이 되겠으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참여는 폭이 최대 7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제한폭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	답변요지
○ 민간인 위원구성의 추천요건은?	○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군수가 추천함.
○ 15명의 위원중 공무원이 민간인 보다 1명 많은 8인인 이유는?	○ 특별한 이유는 없음.

5. 토론요지

-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2조 3항의 「자치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에 들어갈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이며, 동법 4조 1항의 위원회 구성에서 「관」이 민간인보다 1명 많은 8명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형평성문제에 어긋난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불 입 :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2년 12월 23일
제 안 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안 제2조제3항중 15인 이내의 위원중 위원장을 포함한 「관」의 위원 수는 총8명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각종 정책결정에 있어 관의 입장에서 편협될 수 있으므로 역할이 분명치 않은 자치행정과장을 제외하여 위원수를 7명으로 조정하고 제4조제1항중 연임할 수 있는 횟수를 1차에 한하여 제한하여 유능한 위원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연임횟수 조항을 삭제

2. 수정 주요골자

- 안 제2조제3항중 "자치행정과장"을 삭제
- 안 제4조제1항중 "1차 연임"사항을 삭제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항중 "자치행정과장"을 삭제한다.

안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